강 원 특 별 자 치 도

경고·시정

제　　목 공가 등 휴가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소방서 ○○○○○○○○○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병가·공가 등의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건강검진 등[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2]을 공가로 승인하고,

---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다. 공가', '(2) 공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다)'에 따르면,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강원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제11조[3]에 따르면, 전일근무 또는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를 개정·시행(2022.1.1.)됨에 따라서 기존 불명확한 문구, 모호한 표현 등을 보완하여 공가사용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하도록 함

3) 「구.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 제12조(2021.1.20.) *「강원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023. 1. 20.개정)

이와 관련 소방청에서는 2020. 4.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 2021. 8. 18.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경조사 특별휴가 적용 기준을 시달[4]하면서, 시·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2021. 7. 15. 이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2. 2. 18.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적용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휴가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특별휴가의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고 기준을 재시달[5]하였고, 기존 복무처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 등을 고려하여 소급 적용을 자제하도록 시달하였다.

또한 특별휴가 중 임신검진휴가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연가가산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6]·정직·강등·직위해제 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 등[7]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 연가 일수의 가산'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4) 소방청 소방정책과-6848(2021.8.18.)호 「법제처 법령해석 경조사 휴가 적용 기준 알림」
5)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130(2022.2.18.)호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적용 기준 알림」
6)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7)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기간[8]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 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되,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된 공무원(1년 미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9]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헌혈, 건강검진 등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신청하였어야 했고, 결재권자는 공가 신청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하였어야 했으며,

2022. 2. 18. 이후 경조사 특별휴가를 사용 시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확인하여 특별휴가를 신청하여야 했고, 결재권자는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규정된 일수만큼 승인하였어야 했으며,

임신검진휴가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어야 했고,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가산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공가 신청 및 승인의 부적정

○○소방서(○○○○○,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인사발령, 교육출장 등 공가사유가 아님에도 총 6명이 공가를 신청하였고, 결재권자는 공

8)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9) 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가사유가 아님에도 승인하였다.

특히 소방◇ ◇◇◇은 2023. 6. 26. 당직휴무를 승인받아 특수건강검진을 수검 후 2023. 6. 29. 특수건강검진을 사유로 건강검진 공가를 신청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 및 승인의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차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 3]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비교표

구분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대상	일수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자녀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그런데 ○○소방서(○○○○○,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강원도 조례 경조사 규정에는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 휴가에서 규

정하고 있지 않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등의 사유로 총 8명이 특별휴가를 신청하였고, 결재권자는 경조사 특별휴가 사유가 아님에도 승인하였다.

다. 임신검진 특별휴가 사용의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소방☆ ☆☆☆은 남성공무원으로서 임신검진휴가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배우자 임신검진의 사유로 임신검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다.

라. 연가 가산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소방△ △△△를 포함한 3명에 대하여 신규임용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연가 가산을 할 수 없음에도 법정연가일수에 연가 또는 병가 미사용을 사유로 연가를 가산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에 근무하면서 2021. 7. 5.자 인사발령에 따라 ○○○까지 이동시간이 약 45분 소요되어 원격지간[10] 전보발령에 따른 공가사유가 아님에도 2021. 7. 4.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공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고, 2023. 6. 26.자 당직휴무[11]를 승인받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2023. 6. 29. 특수건강검진 사유로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10)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11) 2023. 1. 4.부터 2024. 1. 2.까지 ○○○○○ ○○○○○에 근무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정]** 공가·특별휴가 사유가 아님에도 이를 사용하거나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가 잘못되어 초과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278,950원 및 연가보상비 1,261,510원을 회수하여 도금고로 세입 조치하시기 바라며, 당해연도에 연가가산이 부적정하게 반영된 소방△ △△△에 대해서는 e-사람 복무관리시스템에서 1일을 차감 조치하시고, 부당한 휴가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경고·시정

제　　목 특근매식비 운영 및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내　　용

1. 업무 개요

○○○○○(○○○○○)에서는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특근매식비를 집행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고,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

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12]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고, 세부분류는 별표 11에 따라 구분되며, 그 중 매식비는 200 물건비 - 201 일반운영비 - 01. 사무관리비 중 5. 급량비에 포함되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등에 대한 경비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별표 2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 내역, PC 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

12) 1.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 간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4.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을 반납하는 경우
5.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6.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고, 특근매식비의 경우는 신용카드의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이용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업체에 계좌이체를 하도록 규정[13]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초과근무자 등에 대한 매식비 내역을 월별로 합산하여 품의를 하여야 했고, 거래사업자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했으며, 회계담당자는 사업자에게 계좌이체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했다.

또한 매식비를 지급할 경우 급식제공 대상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초과근무실적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했고,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 받은 근무지 외 국내출장자가 출장종료 후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의 식비와 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았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특근매식비 운영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2021년 1월과 2월에는 월별로 합산하여 적정하게 지출하였으나, 2021년 4월·5월·6월분을 7월에, 2021년 11월·12월분을 12월에, 2022년 1월·6월·7월분을 12월에, 2023년 9월·10월분을 10월에 각각 합산하여 품의하였고, 2024년 2월에는 2023년 1월·2월·4월·12월과 2024년 1월·2월분을 합산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넘어서 지출하였고, 사업체

---

13)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2.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정리한다.
3.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4.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아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특근매식비 운영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나. 특근매식비 관외출장자 중복지출 및 비대상자 착오지출 업무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소속 직원 2명에게 관외출장에 따른 식비 20,000원[14]이 포함된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날 특근매식비를 중복 지급하였고,

또한 ○○○ 회의에 참석하는 관내출장자 3명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매식비를 지출하였고, 초과근무자 등이 아닌 소속 직원 1명에게 매식비를 지출하는 등 매식비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0. 7. 2. 부터 2022. 7. 3. 까지, 소방△ △△△은 2022. 7. 4. 부터 2023. 7. 2.까지, 소방◇ ◇◇◇은 2023. 7.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으로, 소방♡ ♡♡♡은 2019. 6. 4.부터 2023. 1. 3.까지, 소방♧ ♧♧♧은 2023. 1. 4.부터 2024년 1. 2.까지, 소방◉ ◉◉◉은 2024. 1.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으로,

소방◈ ◈◈◈은 2020. 7. 2.부터 2021. 1. 1.까지, 소방○ ○○○은 2021. 1. 2.부터 2021. 10. 26.까지, 소방☆ ☆☆☆은 2021. 10. 27.부터 2023. 1. 3.까지, 소방♡ ♡♡♡은 2023. 1. 4.부터 2023. 7. 9.까지, 소방♧ ♧♧♧은 2023. 7.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으로,

---

14)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전 지출 건(2023.3.2.개정 후 식비 25,000원)

소방◉ ◉◉◉은 2020. 7. 2.부터 2023. 1. 3.까지, 소방△ △△△은 2023. 1. 4.부터 2024. 1. 2.까지, 소방◇ ◇◇◇은 2024. 1.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로, 소방☆ ☆☆☆은 2019. 7. 29.부터 2021. 1. 1.까지, 소방♡ ♡♡♡은 2021. 1. 2.부터 2022. 1. 16.까지, 소방♧ ♧♧♧은 2022. 1. 17.부터 2023. 1. 3.까지, 소방◈ ◈◈◈은 2023. 1. 4.부터 2023. 7. 9.까지, 소방◉ ◉◉◉는 2023. 7. 10.부터 2024. 1. 2.까지, 소방△ △△△은 2024. 1.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매식비 담당자로 특근매식비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였다.

소방☆ ☆☆☆은 특근매식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21년 1월과 2월에는 초과근무자 매식비를 월별 합산하여 지출하였지만, 2021년 4월·5월·6월분을 7월에 합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식비를 지출하였고, 소방♡ ♡♡♡은 특근매식비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22년 1월·6월·7월분을 12월에 합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식비를 지출하였으며, 소방♧ ♧♧♧은 특근매식비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23년 1월·2월·4월에 발생한 매식비를 집행하지 않았고, 소방◈ ◈◈◈는 2023년 1월·2월·4월·12월분을 지출하지 않고 다음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에 지출하게 하였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관외출장자에게 식비를 지급한 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초과근무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중복지급 하였고, ○○○ 관내 출장자들에게는 관내출장 여비가 아닌 매식비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인사이동으로 실무자 및 팀장이 1년마다 교체된 점, 매식비담당자는 특근매식비의 정산을 담당하고 회계담당자는 지출을 담당하여 업무처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 점,

관외출장자의 매식비 중복사항은 출장비가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부서경고]** 특근매식비 운영 및 지급을 부적정하게 한 ○○○○○를 「**부서경고**」 처분하며,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시정]** 관외출장여비와 매식비를 중복지급한 16,000원은 회수하여 도금고로 세입 조치하시고, 비대상자에게 지급한 8,000원을 회수하여 반납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근매식비의 월별 정산 및 지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교육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시정·권고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금, 급여공제금, 반납금 및 세입금 등을 운용하기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공금예금계좌 및 보통예금계좌를 운영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 대통령령[15]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

15)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또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관금(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포함)과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며, 출납원은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보통예금계좌로 납입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공금계좌)로 즉시이체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같은 훈령」제11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하는 장부와 서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증거서류가 출력물 등인 경우에는 지출증거서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표지 다음 장에 증거서류 목록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면서 보통예금계좌로 납부받은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공금예금계좌로 즉시이체하여야 했고, e-호조 시스템으로 납입고지·수납등록을 하고 금액의 성격을 보관금과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였어야 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할 때는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행정과장의 결재를 받고 반환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했고, 반환 영수증 및 지출 증거서류들을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증거서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및 지출 집행 부적정

○○소방서(○○○○○)는 감사기간 중 세입세출외현금 보통예금계좌를 운용하면서 총 101건의 집행건수 중 70건에 해당하는 금액(20,187천 원)을 세입세출

외현금 공금예금계좌로 즉시이체하지 않은 채 세입세출외현금 보통예금계좌에서 바로 출금하여 반납 및 환급하였다. 이 중 49건에 해당하는 금액(12,177천 원)은 세입세출외현금지출 계획 및 결의문서, 세입세출외현금지출 고지서 및 납부영수증을 이용한 지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여 보관금에 대한 회계사고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 세입세출외현금 증거서류 보존 소홀

○○소방서(○○○○○)는 감사기간 중 세입세출외현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지출서류 및 증거서류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편철하지 않은 채 관리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시 공금예금계좌로 즉시이체하지 않고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등 증거서류 보존 관리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0. 7. 2.부터 2023. 1. 3.까지 ○○소방서 ○○○○○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와 보통계좌를 운영하며 보통계좌로 들어온 현금 중 초과수당 소송관련 환수금 등 39건에 대하여 공금계좌로 즉시이체하지 않았고,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등록 및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였고,

소방♧ ♧♧♧은 2023. 1. 4.부터 2024. 1. 2.까지 ○○소방서 ○○○○○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공금계좌와 보통계좌를 운영하며 보통계좌로 들어온 현금 중 건강보험료 미공제액 등 10건에 대하여 공금계좌로 즉시

이체하지 않았고,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등록 및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였다.

한편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와 보통계좌를 같이 운영하게 한 취지는 현재 소방서의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는 농협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고, 농협 공금계좌로의 입금은 농협계좌에서 밖에 입금이 되지 않아 다른 은행(신한, 기업 등)에서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로 바로 입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에 별도의 세입세출외현금 보통계좌를 개설하여 보통계좌로 입금된 보관금 등을 공금계좌로 즉시 이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이 아닌 세입금에 대한 부분의 처리에 관하여 불용차량 매각대금이나 과태료 등 세입금을 세입세출외현금 보통계좌로 받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공금계좌로 즉시이체 및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환하여 회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도 세입결의 및 세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수납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어 하나의 금액이 보통계좌로 들어왔을 때 두 개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상 불편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본부 금고는 신한은행이고 21개 관서는 농협을 금고로 지정하여 세입세출외현금 보통계좌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점, 행정업무처리상 세입금만을 위한 통장은 가지고 있지 않는 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세입세출외현금 업무연찬이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자의 신분상 문책보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에 따라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권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관련 문서 및 증빙서류를 편철하여 정리하시고,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와 보통계좌의 사용방법 및 계좌개설의 취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장(○○○○○○○장)은

[권고] 세입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보통계좌로 들어온 금액의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고, 관계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경고·주의·시정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및 소방용수표지판 설치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前 ○○○○○ ○○○○○) 소방○ ○○○

③ ○○소방서 ○○○○○○○○○(前 ○○○○○ ○○○○○)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 · ○○○○○○○)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총 184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 ·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소방용수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지상식	지하식	승하강식	급수탑	자연수리	비상소화장치
	184	162	-	-	-	3	19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시 ·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

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3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표지를 아래 [표2]와 같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2] 소방용수표지판 설치 기준

규격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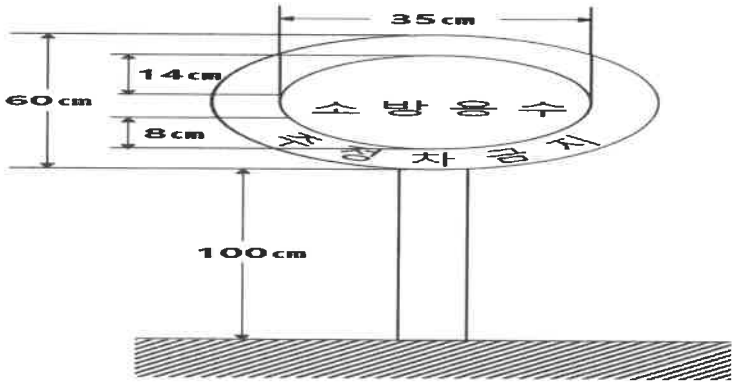	•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자료:「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2] 재구성

그리고「도로법」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같은 법 시행령」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등의 사항[16]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16) ① 점용의 목적 ② 점용의 장소와 면적 ③ 점용의 기간 ④ 점용물의 구조 ⑤ 공사의 방법 ⑥ 공사의 시기 ⑦ 도로의 복구방법

하고,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전봇대·우체통·소화전·간판·표지·깃대 등[17]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고장발생 보고를 통해 수리요구를 하여야 했고, ○○소방서(○○○○○)에서는 고장 소방용수시설의 대체 소방용수를 지정하여 고장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했으며, 고장 소방용수시설을 즉시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구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수리하는 등 항시 가용상태로 유지·관리하였어야 했고, 도로에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표지판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도로점용 협의를 실시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소방용수표지판을 설치하였어야 했다.

---

17) 1. 전봇대·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고장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및 조사부 작성 부적정

○○소방서(○○○○○ · ○○○○○○○)의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28개소 중 9개소는 최장 9일까지 고장발생 보고를 지연하였고, 22개소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최장 215일까지 수리요청을 지연하였으며, 고장 소방용수시설의 대체 소방용수 지정 및 고장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후속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

그리고 고장발생으로 수리 요청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를 확인한 결과 ○○038호의 경우 2023. 5. 3.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중 소화전 스핀들 불량을 발견하여 고장발생 보고가 이루어지는 등 후속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2023년 10월 소방용수조사부에 스핀들 불량사항을 작성하지 않는 등 19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고장 사실을 누락하였다.

나. 소방용수표지판의 도로점용 협의(승인)절차 미실시

○○소방서(○○○○○)의 소방용수표지판 도로점용허가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19개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표지판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2023년 17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표지판을 설치하면서 도로관리청인 ○○○ 등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소방용수표지판을 설치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 등에 대한 판단

○○소방서 ○○○○○○○○○ 소방☆ ☆☆☆ 외 51명은 감사 대상 기간 중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9개소에 대하여 최장 9일까지 고장발생 보고를 지연하였

고, 고장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 작성 시 제수변 개폐불량(3개소), 제수변 확인불가(10개소), 소화전 잠금 불량(1개소), 소화전 미세누수(1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한 고장 사항을 소방용수조사부에 누락하는 등 위 행위는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고장발생 보고 지연이 최대 9일로 지연기간이 길지 않은 점, 고장 소화전 19개소의 소방용수조사부에 고장내역이 누락되었으나 이미 고장발생 보고가 완료된 점, 위 고장 소화전의 담당자가 총 52명으로 수시 교체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문책보다는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서 ○○○○○○○○○ 소방♡ ♡♡♡는 2023. 1. 4.부터 2024. 1. 2.까지 ○○소방서 ○○○○○에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3년 고장 소방용수시설 8개소에 대한 수리요청을 최장 215일 지연하였으며, 2023년 소방용수표지판 17개소를 설치하면서 도로관리청인 ○○○ 등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고장 소방용수시설 9개소에 대하여 대체 소방용수 지정 및 고장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태만이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및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서 ○○○○○ 소방◉ ◉◉◉는 2021. 7. 5.부터 2024. 1. 2.까지 ○○소방서 ○○○○○ ○○○○○○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담당자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요청을 최장 215일 지연하였고, 고장 소방용수시설의 대체 소방용수 지정 및 고장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태만히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소방서 ○○○○○○○○ 소방△ △△△은 2022. 1. 17.부터 2023. 1. 3.까지 ○○소방서 ○○○○○에서 소방용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2년 고장 소방용수시설 11개소에 대한 수리요청을 최장 78일 지연하였고, 고장 소방용수시설 13개소에 대하여 대체 소방용수 지정 및 고장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① **[부서경고]** 소방용수시설의 고장발생 보고 지연 및 고장발생 보고가 이루어진 소화전에 대한 소방용수조사부 작성 시 고장 사항인 소화전 잠금 불량 및 미세누수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

○○○○○○○를 「**부서경고**」 처분하며,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경고]** 위 관련자 소방◇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③ **[시정]** 2023년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소방용수표지판 17개소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를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